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8
----------	-----

2020. 7. 21.(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0년 6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0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2020년 7월 15일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김영미)

가.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나. 주요내용

○ 조직 구성 및 운영 변경

항목	현행	변경안
명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위원연수 주체	교육감	교육장
조치의 주체	학교의 장	교육장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기관장별 책무 사항 수정
 - 교육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책무 추가
 - 학교의 장의 조치 이해 협조에 대한 책무 추가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 설치하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 3. 1.부터 시행되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 등에

서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취지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기 보다는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조례 개정안의 취지나 다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u> 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u>교육장</u> ----- ----- ----- ----- -----.
<신 설>	③ <u>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신 설>	④ <u>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u>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생 략)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u> <u>위원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교육장은 심의위원회</u> ----- ----- ----- ----- <u>심의위원회의</u> ----- -----.

<p>③ <u>학교장</u>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학교의 장</u>----- ----- ----- ----- ----- ----- -----.</p>
<p>제10조(자문기구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u>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u>의 심의와 법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자문기구 설치·운영) --- ----- ----- <u>심의위원회</u>----- ----- ----- ----- -----.</p>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3조(피·가해학생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 안 제11조(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 운영비)

3. 관련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3조, 제11조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추계(2020년 본예산)	
산출기초	계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가. 심의수당 (84,000,000원×10청=)	840,000
나. 사무물품구입(6,400,000원×10청=)	64,000
다. 속기사수당(5,700,000원×10청=)	57,000
라. 사무용품구입(1,800,000원×10청=)	18,000
마. 운영비(100,000원×2청=)	2,000
바. 리모델링비(73,500,000원×3청=)	220,500
사. 급량비(1,300,000원×10청=)	13,000
아. 협의회비(3,400,000원×10청=)	34,000
2. 피.가해학생 지원	
가.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12,000,000원×10기관=)	120,000
3. 관계기관과의 협조	
가. 교육청-유관기관협의회(10,000원×25명×4회=)	1,000
나. 교육지원청-유관기관협의회(20,000원×36명×10청×4회=)	14,400
합 계	1,383,9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전문기관: 생활교육팀 장학사 정승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보통교부금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세 출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합 계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재원 조달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의존 재원	소 계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383,900	1,16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743,9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